

데 이 콤
천 리 안

F A X 서 비 스

지정수신인 : 박원순 변호사

수신 : FAX/8225229994(박원순 변호사)
 발신 : !NR/DACOM/MS/CHOLLIAN/J1116
 송신 시각 : 94/05/26 10:11
 수신 시각 : 94/05/26 11:17
 메시지 ID : 6888122645
 제목 : 보도자료

송신자 : J1116 (윤미향)

보도자료 :

김삼석(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심에서 징역, 자격정기 7년을 선고받은 김삼석 씨와 징역, 자격정기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된 그의 이동생 김은주 씨 의한 사회적 각계 각층의 석방된 원서를 아래와 같이 5월 26일(항소심 2차서) 서울 형사고등법원 3부 재판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김삼석, 김은주 씨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

국가보안법 관련 (국가기밀누설, 회합동선, 지령수수, 잠입탈출 등)
 반국가단체인 재일교포단체중 하나인 한동련과의 회합동선, 국가기밀누설
 등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과정 /

- 1) 93년 9월 8일 12시경 안기부 16어명에 의해 불법체포, 연행
- 2) 93년 9월 16일 19시경 구속영장 발부(연행후 약 55시간 동안 경과)
- 3) 93년 9월 24일 김남매, 김한승 씨 / '재일북한대남공작조직연계 간첩 김삼석, 김은주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 :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어느곳에도 김남매가 형법상 또는 국가보안법상 '간첩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나타나 있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김남매를 마치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형법 제 125조 소정의 피의사실공요죄를 범함.)
- 4) 93년 9월 30일 김영한, 함귀용 검사에 의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소
 - 안기부 수사내용의 형법상 간첩죄 바깥, 국가보안법상 폭력수행죄 외, 관련, 임종형 기내에서 읽기 위해 샀던 한겨레신문과 만지를 한동련 관계자들에게 준 것까지 국가기밀누설로 공소장에 작성되어 있었음.
- 5) 10월 26일, 김삼석 씨의 처 윤미향이 서울지방법원에 김삼석, 김은주 탈당, 안기부수사관 전원을 고소, 고발(김삼석 씨에 대한 불법체포, 연행, 불법수색압수, 기동수사(잠입추적, 장의동 등, 김은주 씨에 대한 불법체포, 연행, 수색압수, 기동수사)
- 5) 93년, 12월 17일 1심 1차공판, 절실증판까지 5차공판, 6차:선고공판
- 6) 94년, 5월 16일, 항소심 1차재판 시작

사건의 중요성 /

1. 김남매와 가족들,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안기부의 치밀한 계획하에 배인오라는 사람을 프락치로 회유, 협박하여 김삼석, 김은주 사건을 만들어 내는데 적극 관용한 공작행위라고 주장.

: 제 4차 공판(증인신문)때 프락치라고 보이는 남부리영상 배인오 씨 동료 박상희 씨가 증인으로 출두, 안기부에 의해 배인오 씨가 고문받은 일, 그 후 화신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제아관동을 계속 보고했던 사실에 대해 증언)

2. 한동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에 대한 반국가단체 대응여부

* 한동련이라는 단체는?

- 원동련의 전신은 한민동(한국반주희북동일속진국민회의)
- 한민동은 1973년 8월 15일 결성
- : 8.15차병주 재일동포사회에서 신탁통치안에 반대하는 사람 “ ”이 재일본조선인 연맹(조련)을 탈퇴하여 재일본 조선거류민단이 결성,
- : 1971년 대동명선거에서 박정희씨에게 도전했던 김대중씨가 민주진영의 유리한 지도가 되어 버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김대중씨는 10월 유신의 폭압성을 신랄히 비판하고 귀국을 보류하며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회복과 통일운동을 전개할 결심을 국내외에 선포하였으며 그의 생명은 여론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 민단의 어용성을 비판하던 재일교포사회의 민주운동의 대표들과 김대중씨는 서로 손을 잡고 해외에서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과 그 운동의 지도조직으로서 한국민주회복 통일속진국민회의(한민동)을 결성하기로 합의.
- 한민동의 활동
 - 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독재 민주화투쟁,
 - 김대중씨 구출운동,
 - 유신헌법을 민주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단안하고 민청학련시건과 '민주회복국민회의'의 국민선언에 대해 그때마다 항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중대회와 가두시위 등으로 박정희 정권 규탄
 - 1979년 6월 김영삼총재하의 신민당에 대한 집중적 탄압과 YH사건, 김영삼총재 직무집행정지 가져온 사건, 김총재의 의원직 박탈사건 등에 대해 한민동은 김영삼총재를 비롯하여 신민당과 YH무역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지지, 성원
 - 나. 전두환정권에 대한 반독재, 반외세투쟁
 - 광주서민대학살규탄, 군정타도를 위한 투쟁과 결합하여 내란음모죄를 체포되어 개차 사형위기에 직면한 김대중씨 구출활동전개
 - 1983년 5월에 전 신민당 총재 김영삼씨가 전두환정권의 강압통치에 반대하여 투기한 단식투쟁, 8월 13일에는 미국으로 강제추방당함. 김대중, 김영삼씨 공동명의로 특별성명발표, 이에 대한 한민동 지지활동, 김영삼씨와 연대단식투쟁
 - 다. 노태우정권에 대한 공안정권에 대한 투쟁
 - 1989년 2월 한민동이 재일한국민주동일연합(한동련)으로 개편, 발족
 - 노태우정권의 공안정국을 타파하고 민간주도의 남북간 자주교류 추진,
 - 노태우 정권은 전민련을 옹공단체로 규정, 해외운동조직을 반국가단체로 때도.
 - 라. 김영삼정권을 지지하고 활동
 - 93년 4월 한동련은 "문민정부의 출현은 4월 혁명이후 국내외동포에 의해 권력기계가 전개되어 온 민주화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개혁정착에 대한 지지를 표명"
 - 문민시대에 맞게 민족자주권의 확립과 한반도비핵화대화실현, 남북합의서 이행, 군부통치의 잔재청산과 민주대개혁 실현 등의 국정방향 내용으로 하는 운동방향을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 마. 따라서 이번 선고공판에서 한동련은 더이상 반정부단체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는 판정을 기대하는 것이다. 한동련은 위의 활동으로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제2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국가기밀누설에관 한 부분

- 오늘날 각종 언론매체의 발달과 현대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원한한 정도의 각종정보는 누구나 별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다.
- 공소사실에 국가기밀이라고 적시된 방대한 내용중 그 어느것도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이 기밀로 분류하여 놓았다는 증거가 없다.
 - 김삼석씨가 공동집필한 [정년과 군대]의 내용이나 반핵평화 제 3.4호, 소요진압의견, 국내신문의 군사관련동향 스크랩, 자주적 민주군대로의 전환 등도 어느권계 당국이 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로 분류하여 놓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 정년과 군대는 국방백서와 주요일간지, 위간지 등에서 발췌한 내용을 취합한 것에 불과하며, 그 자료중 어느것도 수사기관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반칙을 조사받거나 관계자가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탄 원 서

이 당에 정의와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귀하에 정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등의 죄의)으로 1심에서 징역,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김삼석씨와, 징역,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김은주씨에 대한 국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바라며 하루속히 김삼석씨가 석방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와 같은 2월에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탄을 참가자들이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양심수'에 대한 질의들을 했으며, INTERNATIONAL AMNESTY(국제사면위원회) 등의 국제단체인들에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이본에도 불구하고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장권유지 차원에서 이용하여 온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이 문민정부에까지 여전히 존속, 이용되어 오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미 금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제기되고 국제적으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김삼석, 김은주 남매간첩 조작사건이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김남매에 대한 불법체포, 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상해를 서슴치 않았으며 연행 55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연행이전부터 이미 안전기획의 각본은 짜여져 있었고, 가혹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남매간첩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김삼석, 김은주씨에 대한 간첩활동의 증거란 단지 불법감금기간동안 비언언적인 수사에 의한 자백과 일본에 살고 있는 같은 동족, 한동련 관계자들을 만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해 함께 대화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어떤 사상, 어떤 이념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며 북한을 같은 민족공동체로 강조했습니다. 이 취임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귀 재판부에서 김삼석, 김은주씨에게 읽어준 국가보안법상 특죄수행죄 등이 무죄로 인정될 수 있도록 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국에 오고 싶어도 군사독재정권사절이 찍힌 해외여행인사, '반한단체'의 낙인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은 이들에 대한 사슬을 풀어 그들이 고향 길치맛을 다시 맛볼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1994년 5월 26일

발원인 : 아래 중 1,613인

국 회 :

국회의원 / 이부영, 이우경, 임채정, 이길재, 김영진, 원해영, 박석두, 개정구, 장영민, 정상용, 박계동, 신계론 xxxxxxxx 12인
보좌관 및 비서 / 정병진, 임근우, 안은하, 전병선, 김윤정, 정계종, 강정구, 이경희, 김성, 정경애, 전영구, 안형호, 이천희, 최문재, 이진수, 김주석, 홍성진, 박성태, 안재훈, 홍진희, 박우선, 서현용, 김명준, 김현미, 박해수, 윤수경, 권종대, 김진천, 윤우덕, 최종규, 우원식, 이달원, 송광호, 강현우, 장성수, 김영대, 김대영, xxxxxxxx 42인

교수 : 김진균, 박현서, 김홍기, 박창희, 기세훈, 정진성, 윤정환, 김남재, 한상권, 김준호, 신해수, 양재희, 김주태, 조영진, 선순화, 조희환 xxxxxxxx 16인

지문교정 :

지문교정 : 이해학, 홍근수, 김경남, 박기백, 윤기석 등 xxxxxxxx 62인
지문교정 및 교인 : 김성해, 서보희, 정은일 등 xxxxxxxx 37인

여성계 : 이효재, 윤정옥, 이미경, 박순금, 나선경 xxxxxxxx 등 61인

정신대 할머니 : 강덕경, 김순덕, 이영순, 박옥련, 박두리, 손판남, 문필기, 김복동, 윤두리, 이용녀 xxxxxxxx 16인

연봉인 : 장명국, 황강욱 등 ***** 4인

봉고제 :

스님 : 송원주, 지선, 진관, 해공, 이정하, 법광, 원성, 일우, 기홍, 삼지
정덕, 임면, 동성, 지원, 도관, 이광, 도전, 종현, 상의, 상곡,
정산, 표식, 광국, 정안, 광동, 법현, 광배산, 광영, 사현, 원명,
리조, 도성, 법성, 종택, 어연, 도각, 법연, 정연, 백암, 법광,
연승, 법광, 경법, 지우 ***** 44인

기관 및 단체 : 서동석, 김태형, 강혜련, 이해심 김희숙 등 ***** 28인

통일, 평화, 인권단체 :

장길승, 윤성식, 조성우, 서준식, 오창래, 이수갑 등 ***** 78인

기타 농업 및 파사원 : ***** 31인